

의안번호	제 49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0년 10월 5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
----------	----

제출연월일 : 2010년 10월 5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2010. 12. 1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자동차 무관할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동차 사용본거지와 무관하게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 등록 업무처리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시·도세 지방세 부과·징수 표준조례안」 참고

2. 주요내용

-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신설(안 제10조의2)
 - 자동차 등록시 사용본거지 시장·군수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납세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음

※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제」: '10. 12. 1 시행, 국토해양부 추진

- 수탁받은 시장·군수는 등록 관련 서류를 3일 이내에 사용본거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전산 송부토록 규정

3. 의안전문 : 불 입
4. 신·구조문대비표 : 불 입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입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50조의2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시장·군수는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제10조의2(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50조의2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시장·군수는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p>

현 행	개 정 안
	<p>단체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p>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 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참고자료

시·도세 지방세 부과·징수 표준조례 개정안

「시·도세 지방세 부과·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00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 할 수 있다.
-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50조의2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 할 수 있다.
-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 송부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